

[별표 14의2] <신설 2007.9.14>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제34조의3제4항 관련)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패, 공정안전 관리 실패, 저장탱크 운영 실패,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패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2. 안전성평가는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